

2024년 제1차 전문위원 채용 공고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'기정원')은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의거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전문기관으로서,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1월 9일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

1. 채용분야

채용직급	채용직무	근무지	세부내용	규모
전문위원 다급	법무	세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무 업무 및 법률자문 등 - 행정심판, 행정소송, 민사, 형사 소송 등 대응 - 기정원 및 추진단 관련 법령, 내규 검토 및 개선 - 사업 관련 지침·규정 개정 및 주무부처 대응 등 	1명

- ◆ 근무기간 : 1년(근무성적에 따라 최대 3년까지 1년 단위 재계약)
- ◆ 보 수 : (다급) 약 69,996천원 수준(성과급 별도)
 - ※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◆ 근무지 : 기정원 본원 및 부설기관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)
- ◆ 순환근무 :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,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 근무를 실시함(근무지역, 보수,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동일함)

2. 자격요건(해당 자격은 공고일('24.1.9.)을 기준으로 함)

- 변호사 자격 소지자
 - ※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변호사법에 의한 수습실무 6개월을 마치고 등록을 완료한 자
- 공고일('24.1.9.)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
- 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(※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)
-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임용예정일('24.2.26.)에 임용 가능한 자(단, 협의를 통해 2주간 유예 가능)
 - * 검직불가 :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
 - **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
- 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

3. 결격사항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-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
-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-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
-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
4. 우대사항(우대사항은 공고일(24.1.9.)을 기준으로 함)

- ◆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각 전형별 만점의 60% 미만(과락)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
 - 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- ◆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(지원자별 최대 10%까지만 적용)
- ◆ 「8. 증빙서류 제출」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
 - ※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우대사항 적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후 기입요망
- ◆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. 단,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증명서에 표기된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
 - ※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

대상	가점 (100점 기준)	전형단계	
		서류전형	면접전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업지원대상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※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'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' 명시 	5점 또는 10점	○	○

대상	가점 (100점 기준)	전형단계	
		서류전형	면접전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※ 해당여부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	5점	○	○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소득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※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	3점	○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부모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※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	3점	○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력단절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※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(택 1) 등으로 확인 ※ 여성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, 공고일('24.1.9.) 기준 최근 1년('23.1.9. 이후) 이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상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	3점	○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이탈주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※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	3점	○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수도권 지역인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, 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사람 ※ 최종학력 학위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로 검증 	2점	○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사능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※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 	1점	○	

5. 전형절차 및 방법

- ◆ 우대사항 적용 전 전형(서류, 면접) 점수가 **전형별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**
 - ※ 단,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채용직무의 경우 지원자가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- ◆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
- ◆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(월/일)을 지정기간 내 안내된 제출처로 제출, 기간 내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(증명사진 및 생일(월/일)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함)
- ◆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
「취업지원대상자-장애인-경력단절여성-이전지역인재-면접전형 고득점자-서류전형 고득점자」
 - ※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

전형구분(가중치)	세부사항	배점	통과기준
서류전형(40%)	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	100점	5배수
면접전형(60%)	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	100점	-

< 서류전형 >

-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: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전문자격의 보유 여부
- 서류기재 상태 검토 : 서류 부적격 판단기준(지원서 미비, 블라인드 위반)에 해당되는지 여부
 - ※ **서류 부적격 판단 기준**
 - ▶ **자격요건 미달** : 자격요건 미충족
 - ▶ **지원서 미비** : 지원서 작성 미완료,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(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)
 - ▶ **블라인드 위반** :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타기관명 기재(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), 지인근무 여부, 성명(본인 성명 포함), 신체적 조건, 성별, 혼인여부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·친인척의 직위/직업/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 - ▶ **공정채용 위반** :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
- 서류평가 :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
 - ※ 서류전형 평가항목 : 직무적합성(20), 조직이해능력(20), 문제해결능력(20), 자원관리능력(20), 정보능력(20)

< 면접전형 >

-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(1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 - ※ 면접전형 평가항목 : 인성 및 직업윤리(20), 의사소통능력(20), 직무수행능력(20), 전문능력(20), 조직이해능력(20)

6. 전형일정

- ◆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
- ◆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개인별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공지
- ◆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경력검증,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4. 1. 9.(화)	
지원서 접수	2024. 1. 9.(화) ~ 1. 25.(목)	18:00 접수마감
서류전형	2024. 1. 30.(화)	합격발표 : 2024. 2. 2.(금)
증빙서류 접수	2024. 2. 2.(금) ~ 2024. 2. 5.(월)	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: 2024. 2. 7.(수)
면접전형	2024. 2. 14.(수)	합격발표 : 2024. 2. 19.(월)
경력검증 등	2024. 2. 19.(월) ~ 2. 26.(월)	
조건부 임용	2024. 2. 26.(월)	임용일 협의 및 조정 가능

7. 접수방법

- ◆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 완료 및 제출 요망
- ◆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완료 후 최종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유의요망
- ◆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관련 일반적 문의는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- Q&A 문의 이용 요망

구분	일정	비고
접수기간	2024. 1. 9.(화) ~ 1. 25.(목)	18:00 접수마감
접 수 처	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	https://tipa.applyin.co.kr

8. 증빙서류 제출

- ◆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 모두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
- ◆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용이며,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
- ◆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◆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및 방법은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안내
- ◆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전 준비요망,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응시 불가
 - ※ 일부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별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◆ 외국어로 된 서류(외국에서 발급한 서류)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,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- ◆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채용 공고일('24.1.9.) 기준 직전 3개월('23.10.9. 이후 발급)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단,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('23.10.9.~'24.1.9.) 발급된 서류만 인정
 - 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예외
- ◆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필수
- ◆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제출시기	제출서류
지원서 접수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: 입사지원서, 경력기술서, 직무수행계획서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후속전형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격요건 관련(해당 직무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공통 자격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역 의무대상자 : 병적증명서 b. 법무(해당자에 한함,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, 변호사 등록증 사본 • 우대사항 관련(해당자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'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' 명시 b. 장애인재 : 장애인증명서 c.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제출시기	제출서류
	<p>d.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</p> <p>e. 경력단절여성 : 가족관계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등 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</p> <p>f.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</p> <p>g. 비수도권 지역인재 : 재학증명서, 학위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</p> <p>h. 한국사능력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</p> <p>• 경력사항 관련(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입한 경우 2가지 모두 제출)</p> <p>a. 경력(재직)증명서 ※ 인턴(청년인턴)의 경우 인턴십 수료증으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</p> <p>b.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선택) 가입이력 내역서 ※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</p> <p>• 교육사항 관련(해당사항 모두 제출)</p> <p>a.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- 고등학교 이하 :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 - 검정고시 :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- 초대졸 이상 :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※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</p> <p>• 이전지역인재 관련(해당자에 한함)</p> <p>-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</p>

9. 유의사항

- ◆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(학교명, 특정기업,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) ※ 예 : 123@tipa.or.kr, 456@korea.kr
- ◆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(※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)

①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

-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가입 및 인증을 위한 전자메일 가입 시 본인의 출신 학교, 소속 기업(기관)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,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-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
-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 - ※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: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
-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타자,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
 -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중복지원, 자격요건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

② 일반사항

-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전형별 통과 기준 :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
 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(우대가점 포함)
-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으로는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
 - 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
 - 단,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
- 임용포기,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 제외 후 채용 직무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

-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간 유지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
- 채용공고 후 공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
 - * 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단순 채용일정(일자) 변경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생략 가능
 - *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,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공고 가능
- 최종합격자의 임용·보수·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
-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,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,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
 - * 경력(재직)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하며, 증빙할 수 없는 경력(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·용역 수행 등)은 인정하지 않음

3 부정행위 등

-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,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
 - ※ 부정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
-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, 비리연루자, 부정합격자는 「부정청탁금지법」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
 - ※ 부정합격자 :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(300만원 이상 벌금형)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

4 기타사항

-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
-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 (기정원 홈페이지 → 참여마당 → 원클릭신고창구)로 신고

10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방지 관련 사항

구분	세부내용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제7-2판)' 및 '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' 적용* 개정 시 최신지침 적용• 모든 지원자 개별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마스크 착용 권고

11. 문의사항

-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<https://tipa.applyin.co.kr>) Q&A 게시판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담당자(044-300-0323, 0327) 이용